

제2726호
2020. 4. 8.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 전 산 과 장 김 건 태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0-266호 : 서울특별시 중구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2

● 고 시

제2020-40호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7

● 공 고

제2020-259호 : 서울특별시 중구 명예도로명 공고 8

제2020-265호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9

제2020-271호 :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11

제2020-277호 : 건축 협정 인가 공고 12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66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02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민관 협력의 활성화와 주민의 구정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 원칙 규정 (안 제1조~제3조)
○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 규정 등 (안 제4조~6조)
○ 협치중구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에 관한 규정 (안 제7조~제9조)
○ 위원 임기 및 위촉해제, 의장의 직무, 회의개최에 관한 규정 등 (안 제10조~14조)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관한 규정 (안 제16조)
○ 협치조정관, 민관협치 협약,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에 관한 규정 (안 제17조~19조)
○ 관련기관과의 협력,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0조~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동정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동정부과, 전화 : 02-3396-4576, 팩스 : 02-3396-8613, email : ahromin@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중구 조례 제 호

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관협치”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구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협치조정관”이란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란 구에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민관협치 공론장”이란 협치중구 추진을 위해 민관이 함께 모여 대화와 토론을 통해 숙의하는 장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구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협치중구회의

제7조(설치)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협치중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회의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협치사업의 집행 총괄 및 제도 개선 실행 등을 위하여 행정지원 조직인 협치중구 추진단 또는 협치중구 사무국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8조(기능 등)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회의는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① 회의는 의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공동의장이 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국장과 협치조정관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의견 청취 등) ① 회의는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

제16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회의는 정책과정에서의 구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제1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연도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7조(협치조정관)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 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을 위하여 민·관 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의거하여 협치 조정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18조(민관협치 협약) ① 구청장은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 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명시한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구청장은 회의가 권고한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협치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 구청장은 중구 공무원과 구민의 협치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세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40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지적도근 점 번호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소재지
	X(m)	Y(m)	X(m)	Y(m)	
9775	552,002.15	198,421.31	451,696.28	198,350.34	중구 남대문로 117
9776	552,000.93	198,402.74	451,695.06	198,331.77	중구 을지로3길 30-6
9777	551,993.02	198,359.58	451,687.15	198,288.62	중구 을지로3길 29
9778	552,020.99	198355.77	451,715.11	198,284.81	중구 을지로3길 35
9779	552,044.85	198,349.50	451,738.97	198,278.54	중구 다동길 33
9780	552,020.72	198,295.04	451,714.84	198,224.09	중구 다동길 30
9781	552,038.44	198,242.83	451,732.56	198,171.89	중구 다동길 14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비고
설치일	2020.03.25.				
표지의 재질	철재				
측량성과 보관장소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지관리과				
비고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				

※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259호

서울특별시 중구 명예도로명 공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5 규정에 의거 우리구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명예도로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명예도로명 내역

- 명예도로명 : 유네스코길
- 도로구간 : 시작지점(명동2가 83-5), 끝지점(저동1가 39-4)
- 부여 사유
 - 명동에 위치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국 유네스코 활동의 중심이 되었으며, 지난 2010년에는 가입 60주년을 기념, 유네스코길을 지정하여 많은 활동을 하였고, 또한 기간 만료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명예도로명 재지정 요청에 따른 연장
- 사용 기간 : 5년(2020.4.28.~2025.4.27.)

○ 위치도



※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토지관리과 (☎ 3396-594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265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중 구 청 장

1. **공고의 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0.04.08 ~ 2020.04.23

3. 공 고 대 상

- 자동차등록번호 : 47소5151** 외 6건
- 소 유 자 명 : 최** 외 6건
- 운행정지 명령일자 : 2020.03.01.-2020.03.31.
- 운행정지 사유 : 소유자 요청에 의거

4.공 고 내 용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중구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02-3396-62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정지 자동차 현황

연 번	운행 정지 상태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명	소유자등록번호	사용본거지주소
1	등록	47소5151	WDDUG8FB 7FA146540	최**	860425-1*****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길 **-**, **호(신당동)
2	등록	04머7672	JTHBW1GG 4H2147033	신****주식 회사	110111-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에이동(을지로2가, 파인에비뉴)
3	등록	43우1900	WBAXX110X J0Y53969	비***** **아(주)	110111-2*****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 ****호(회현동2가, 남산스테이트타워)
4	등록	15허6487	KMHE341D BHA300867	성***카(주)	110111-2*****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 ***호(서소문동, 배재빌딩)
5	해제	59모4239	KPBXH3AR1 JP212964	이**	590514-1*****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 **동 ****호(신당동, 남산타운아파트)
6	등록	48루0121	WBAXX1105 G0R42440	비***** **아(주)	110111-2*****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 ****호(회현동2가, 남산스테이트타워)
7	등록	04버6015	1J8GL3852 5W686885	메***** *스	110111-2*****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 **층(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20-271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변경사항		
				구분	전	후
수질 -16호	에코이앤오 주식회사	김 **	중구 서소문로 125, 6층 (서소문동, 한화빌딩)	소재지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11 층	중구 서소문로 12 5, 6층 (서소문동, 한화빌딩)

가. 공고기간 : 2020. 4. 8. ~ 2019. 4. 23. 까지

나. 공고방법 : 우리구 홈페이지에 전자 공시 및 구보게재. 끝.

2020. 4. 8.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277호

건축 협정 인가 공고

우리 구 남산동3가 31-6호 외 1필지 및 남산동3가 31-15호 외 6필지 지상 건축협정 신청지에 대하여『건축법』제7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9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4월 0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 1. 명 칭 : 남산동3가 컬러센터 신축공사
- 2. 목 적
 - 건축협정을 통해 A동에 지하주차장 진출입로를 통합조성함으로써, 남산초등학교 교문과 최대한 이격한다.
 - 대지 전체에 통합 적용하는 건폐율을 활용하여, 건축물의 효율적인 배치로 인접대지들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A필지의 지상층에 골목서비스 공간 및 넓은 외부공간을 제공하여, 막다른 도로환경 개선에 이바지한다.
- 3. 대지위치 : 남산동3가 31-6 외 1필지 / 남산동3가 31-15 외 6필지
- 4. 유효기간 : 건축물 존치 시까지
- 5. 건축협정내용
 - 가. 건축물의 위치 · 규모 · 용도 · 형태 등에 관한 사항

구분	위치	대지면적 (㎡)	건축선	건축물 용도	건축물 높이(m)	건축물 층수	지붕형태	외벽형태
A동	남산동3가 31-6 외 1필지	133.8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m 이격 (사주단위계획)	근린생활시설	8	지하2층 지상2층	평지붕	유커튼월
B동	남산동3가 31-15 외 6필지	766.54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m 이격 (사주단위계획)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12	지하2층 지상3층	평지붕	유커튼월

나. 건축협정 세부내용

- 1) 합벽건축
- 2) 대지의 조경 통합적용

- 3) 지하층 및 부설주차장 통합적용
- 4) 건폐율 통합적용
- 5) 용적률 통합적용
- 6) 건축설비 및 부대시설의 통합적용
- 7) 하수처리시설의 통합적용
- 8) 협정구역내 필지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적용배제

6. 게시장소 : 중구 게시판, 해당 동 주민센터 게시판,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 중구 구보

※ 관계서류는 중구청 건축과(☎02-3396-5804)에서 열람 가능